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찰청의 정책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0명(경감 3명, 경위 5명, 경사 1명, 경장 1명)을, 경찰청 소속기관에 수사 등 민생치안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127명(경정 10명, 경감 31명, 경위 131명, 경사 250명, 경장 329명, 순경 376명)을 각각 증원하되, 증원되는 인력 중 330명(경감 8명, 경위 70명, 경사 102명, 경장 109명, 순경 41명)은 평가 대상 정원으로 규정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사이버 범죄 수사 업무 등을 담당하는 3개 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3명을 경찰청 소속기관 정원 3명(경정 3명)의 직급을 상향(총경 2명, 4급·연구관 또는 총경 1명)하여 배정하고, 민생치안과 수사역량 강화 등을 위해 정원 485명(경감 56명, 경위 423명, 6급 5명, 7급 1명)의 직급을 상향 조정(경정 56명, 경감 423명, 5급 6명) 하는 내용으로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1.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국관 및 소속기관별 증원되는 인력의 세부 직급을 반영하는 한편, 치안수요 증가를 반영하여 경기남부경찰청 하남경찰서를 2급지에서 1급지로 상향하고, 업무변화에 따라 일반직 직렬 일부를 전환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2021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3항 단서 중 “대구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경상북도”를 “대구광역시·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북도·경상북도”로, “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남도”를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남도”로 한다.

제63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기도북부·충청남도”를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로, “광주광역시·대전광역시”를 “광주광역시”로, “제8호를”을 “제8호를 제외하고, 전라북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로 한다.

제6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남도”를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남도”로 한다.

별표 12의 경기도남부 경찰청의 1급지란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안양동안·안양만안·군포·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부천소사·부천원미·부천오정·광명·안산단원·안산상록·시흥·평택·오산·화성서부·화성동탄·용인동부·용인서부·광주·김포경찰서”를 “수원중부·수원남부·수원서부·안양동안·안양만안·군포·성남수정·성남중원·분당·부천소사·부천원미·부천오정·광명·안산단원·안

산상록 · 시흥 · 평택 · 오산 · 화성서부 · 화성동탄 · 용인동부 · 용인서부
· 광주 · 김포 · 하남경찰서”로 하고, 같은 표 경기도남부 경찰청의 2급
지란 중 “과천 · 의왕 · 하남 · 이천 · 안성 · 여주경찰서”를 “과천 · 의왕
· 이천 · 안성 · 여주경찰서”로 한다.

별표 13 중 총계 “1,907”을 “1,917”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99”를 “1,2
09”로 하며, 경감 “416”을 “419”로 하고, 경위 “336”을 “341”로 하며, 경
사 “175”를 “176”으로 하고, 경장 “28”을 “29”로 하며, 행정서기보 “31”을
“30”으로 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를 “10”으로 한다.

별표 14 중 총계 “1,990”을 “2,000”으로 하고, 경찰공무원 계 “1,199”를
“1,209”로 하며, 경감 “416”을 “419”로 하고, 경위 “336”을 “341”로 하며,
경사 “175”를 “176”으로 하고, 경장 “28”을 “29”로 하며, 행정서기보 “50”
을 “49”로 하고,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를 “10”으로 한다.

별표 15 중 총계 “129,311”을 “130,438”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29,270”을 “130,397”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25,543”을 “126,669”로 하고, 총경 “525”를 “527”로 하며, 경정 “2,719”
를 “2,782”로 하고, 경감 “9,329”를 “9,727”로 하며, 경위 “15,425”를 “15,1
33”으로 하고, 경사 “25,708”을 “25,958”로 하며, 경장 “32,065”를 “32,394”
로 하고, 순경 “39,676”을 “40,052”로 한다.

별표 15 중 일반직 계 “3,705”를 “3,706”으로 하고, 서기관 · 연구관 또는
총경 “10”을 “11”로 하며,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6”을 “21”로 하
고, 공업주사 “5”를 “4”로 하며,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0”을 “7”로 하

고, 공업주사보 “17”을 “16”으로 한다.

별표 16 중 총계 “130,158”을 “131,285”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30,117”을 “131,244”로 하며, 경찰공무원 계 “125,543”을 “126,669”로 하고, 총경 “525”를 “527”로 하며, 경정 “2,719”를 “2,782”로 하고, 경감 “9,329”를 “9,727”로 하며, 경위 “15,425”를 “15,133”으로 하고, 경사 “25,708”을 “25,958”로 하며, 경장 “32,065”를 “32,394”로 하고, 순경 “39,676”을 “40,052”로 한다.

별표 16 중 일반직 계 “4,552”를 “4,553”으로 하고, 서기관·연구관 또는 총경 “10”을 “11”로 하며,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6”을 “21”로 하고, 공업주사 “5”를 “4”로 하며,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0”을 “7”로 하고, 공업주사보 “67”을 “66”으로 한다.

별표 18 제2호나목11)의 정원란 중 “109명”을 “112명”으로 하고, 같은 란 중 “경위 25명”을 “경위 27명”으로, 같은 란 중 “경장 28명”을 “경장 29명”으로 하고, 같은 목 12)의 정원란 중 “329명”을 “331명”으로 하며, 같은 란 중 “경사 159명”을 “경위 1명, 경사 160명”으로 하고, 같은 목 15)의 정원란 중 “35명”을 “41명”으로 하며, 같은 란 중 “경장 12명”을 “경위 1명, 경사 2명, 경장 15명”으로 하고, 같은 목에 29)부터 31)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강력범죄수사 업무(시·도경찰청)	85명 (경감 8명, 경위 30명, 경사 19명, 경장 20명, 순경 8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30) 여성청소년수사 업무(시·도	165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찰청)	(경위 36명, 경사 61명, 경장 54명, 순경 14명)	
31) 범죄예방 및 질서유지 업무 (시·도경찰청)	69명 (경사 19명, 경장 31명, 순경 19명)	2023년 12월 31일까지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하부조직) ①·② (생략)		제50조(하부조직) ①·② (헌행과 같음)
③ 대구광역시 · 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 울산광역시 · 경기도북부 · 강원도 · 충청북도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전라남도 ·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시 · 도경찰청 공공안전부에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 · 경비과 및 공공안녕정보외사과를 두고, 수사부에 수사과 · 형사와 및 안보수사과를 두며, 자치경찰부에 생활안전과 · 여성청소년과 및 교통과를 둔다. 다만, 경상북도경찰청에는 다른 시 · 도경찰청의 경무기획정보화장비과에 속하는 사무를 경무기획과와 정보화장비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경상남도경찰청에는 다른 시 · 도경찰청의 공공안녕정보외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공공안녕정보과와 외사과로 나누어 분장하며, 대구광역시 · 경기도북부 · 충청남도 · 경상북도 및 경상남도의		③ ----- ----- ----- ----- ----- ----- ----- ----- ----- ----- ----- ----- ----- ----- ----- ----- ----- ----- 대구광역시 · 대전광역시 · 경기도북부 · 충청남도 · 전라북도 ·

시·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수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수사과와 사이버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고, 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남도 및 경상북도의 시·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형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형사과 및 과학수사과로 나누어 분장하며, 대구광역시 및 경상남도 시·도경찰청에는 다른 시·도경찰청의 형사과에 속하는 사무를 형사과·과학수사과 및 광역수사대로 나누어 분장한다.

④ ~ ⑧ (생략)

제63조(수사과) 수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인천광역시·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제9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경기도북부·충청남도 및 경상북도의 시·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경상북도 -----

-----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전라남도 -----

-----.

④ ~ ⑧ (현행과 같음)

제63조(수사과) -----
-----.

----- 대전광역시·경기도북부·충청남도 -----

사항을 제외하며, <u>광주광역시 · 대전광역시 및 전라남도의 시 · 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8호를 제외한다.</u>	----- <u>광주광역시</u> ----- ----- ----- ----- <u>제8호를 제외하고, 전라북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수사과장의 경우에는 제10호를</u> ----- ----- -----.
1. ~ 10. (생략) 제64조(형사과) 형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다만, 부산광역시 · 대구광역시 · 인천광역시 · 경기도남부 및 경상남도의 시 · 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u>경기도북부 · 충청남도 · 전라남도 및 경상북도 시 · 도경찰청 수사부에 두는 형사과장의 경우에는 제4호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u>	1. ~ 10. (현행과 같음) 제64조(형사과) ----- -----. ----- ----- ----- ----- ----- ----- <u>대전광역시 · 경기도북부 · 충청남도 · 전라남도</u>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신·구정원대비표

[별표 13]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907</u>	<u>1,917</u>	+10
경찰공무원 계	<u>1,199</u>	<u>1,209</u>	+10
•	•	•	
•	•	•	
경 감	<u>416</u>	<u>419</u>	+3
경 위	<u>336</u>	<u>341</u>	+5
경 사	<u>175</u>	<u>176</u>	+1
경 장	<u>28</u>	<u>29</u>	+1
•	•	•	
•	•	•	
행정서기보	<u>31</u>	<u>30</u>	-1
•	•	•	
•	•	•	
전산서기보 또는	<u>9</u>	<u>10</u>	+1
방송통신서기보			
•	•	•	
•	•	•	

[별표 14]

경찰청 공무원 정원표(제77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1,990	2,000	+10
경찰공무원 계	1,199	1,209	+10
경 감	416	419	+3
경 위	336	341	+5
경 사	175	176	+1
경 장	28	29	+1
행정서기보	50	49	-1
전산서기보 또는 방송통신서기보	9	10	+1

[별표 15]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본문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29,311</u>	<u>130,438</u>	+1127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29,270</u>	<u>130,397</u>	+1127
경찰공무원 계	<u>125,543</u>	<u>126,669</u>	+1126
•	•	•	
•	•	•	
총 경	<u>525</u>	<u>527</u>	+2
경 정	<u>2,719</u>	<u>2,782</u>	+63
경 감	<u>9,329</u>	<u>9,727</u>	+398
경 위	<u>15,425</u>	<u>15,133</u>	-292
경 사	<u>25,708</u>	<u>25,958</u>	+250
경 장	<u>32,065</u>	<u>32,394</u>	+329
순 경	<u>39,676</u>	<u>40,052</u>	+376
•	•	•	
•	•	•	
일반직 계	<u>3,705</u>	<u>3,706</u>	+1
•	•	•	

·	·	·	
서기관·연구관 또는 총경	<u>10</u>	<u>11</u>	+1
·	·	·	
·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6</u>	<u>21</u>	+5
·	·	·	
·	·	·	
공업주사	<u>5</u>	<u>4</u>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10</u>	<u>7</u>	-3
·	·	·	
·	·	·	
공업주사보	<u>17</u>	<u>16</u>	-1
·	·	·	
·	·	·	

[별표 16]

경찰청 소속기관 공무원 정원표(제78조제1항 단서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	•	•	
총 계	<u>130,158</u>	<u>131,285</u>	+1127
1. 공무원			
계 (시간선택제 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u>130,117</u>	<u>131,244</u>	+1127
경찰공무원 계	<u>125,543</u>	<u>126,669</u>	+1126
•	•	•	
•	•	•	
총 경	<u>525</u>	<u>527</u>	+2
경 정	<u>2,719</u>	<u>2,782</u>	+63
경 감	<u>9,329</u>	<u>9,727</u>	+398
경 위	<u>15,425</u>	<u>15,133</u>	-292
경 사	<u>25,708</u>	<u>25,958</u>	+250
경 장	<u>32,065</u>	<u>32,394</u>	+329
순 경	<u>39,676</u>	<u>40,052</u>	+376
•	•	•	
•	•	•	
일반직 계	<u>4,552</u>	<u>4,553</u>	+1
•	•	•	

·	·	·	
서기관·연구관 또는 총경	<u>10</u>	<u>11</u>	+1
·	·	·	
·	·	·	
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u>16</u>	<u>21</u>	+5
·	·	·	
·	·	·	
공업주사	<u>5</u>	<u>4</u>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u>10</u>	<u>7</u>	-3
·	·	·	
·	·	·	
공업주사보	<u>67</u>	<u>66</u>	-1
·	·	·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경찰청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연 락 처	(02) 3150 - 1157